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박형준 의원 등 27인)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 입장

2005. 10. 14. 한국도서관협회

1. 기본입장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는 최근(2005.9.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전부 개정 법률안(박형준 의원등 27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리 협회는 2005.6.1. 제출된 이미경 의원등 47명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전부 개정 법률안이 도서관계의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되, 주요 쟁점은 추후 도서관계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내용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우리 협회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그 결과 우리 협회는 2005년 6월 1일자로 이미경 의원등 47인이 발의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1)')이 우리 협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또 다시 2005년 9월 1일 박형준 의원등 27인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전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2)')을 제출함으로써 도서관 발전과 운영에 관한 새로운 논의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됨. 이에 우리 협회는 개정 법률안(1)을 지지하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개정 법률안(2)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함.

2. 개별 쟁점에 대한 의견

■ 개정 법률안(2)은 개정 이유가 불분명하다

- 개정 법률안(2)은 현행 법과 개정 법률안(1)을 임의로 적절하게 조합한 법률안으로 보여짐. 제안이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실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관중별 특성에 따른 발전과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율하거나 독서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은 별도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법률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 같지는 않음.
- 예를 들어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안 제7조)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의 주체를 문화관광부, 교육 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개정 법률안(1)은 제13조 내지 제15조를 통해 연차 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 그리고 도서관 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끌어 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도서관발전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 개정 법률안(2)에서는 단지 제 13조에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음.

■ 문고와 특수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정 법률안(2)은 개정 법률안(1)이 문고와 특수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현행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문고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현재에는 도서관과 달리 정책적 관심의 대상에서 일정부분 벗어나 있음. 그래서 개정 법률안(1)에서는 이들 문고를 도서관의 일종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단위로 공공도서관과 문고를 긴밀하게 연결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임.
- 특수도서관의 경우에도 도서관 서비스 대상이 장애인, 장애인, 교정시설 재소자, 입원환자 등과 같이 비록 특별한 환경에 처해있기는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인 '공중'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개정 법률안(1)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보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지만, 그 동안의 도서관 발전 역사와 현실을 고려해서 그들은 유지한 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임. 특별한 환경에 처해있지만 특수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다른 국민들과 같은 수준에서 공공도서관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장애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별도의 도서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공 도서관에서 당해 지역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임.
- 또한 개정 법률안(1)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정해 '어린이도서관'을 새롭게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에 포함했으나, 개정 법률안(2)은 어린이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한 사항을 제시(제4조)하면서도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 적용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개정 법률안(2)이 적용범위(제5조)를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그 대상에 '평생학습관'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법률 제6400호) 제13조 3항에 의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에 설치하도록 한 것임. 이처럼 평생교육을 위해 다른 법률에서 설치하도록 한 평생학습관을 일방적으로 도서관에 포함시킬 경우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에서는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일부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함. 다만 개정 법률안(2)과 같은 방안의 적절성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국가대표도서관 문제

- 개정 법률안(2)은 개정 법률안(1)에서의 '국가대표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대체하였음. 이는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에 대해 다른 도서관에서의 반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함.

○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조정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고 함.

■ **납본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 납본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법률에 그 목적과 대상 등이 명시되어야 함. 그러나 개정 법률안(2)에서 납본을 국립도서관에 하도록 한 조항(제14조)을 보면 납본 대상인 국립도서관이 정확하게 어떤 도서관이며 몇 개관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납본의 대상인 국립도서관이 어느 도서관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납본 조항을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지역보존전문도서관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개념 정립 등이 필요하다**

○ 개정 법률안(2)은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지역보존전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8조),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과연 누가 설립·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지역보존전문도서관이 해당지역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보존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공공도서관에만 국한한 것으로 생각됨. 보존전문도서관이 필요하다면 그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학교, 대학, 전문도서관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법률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음.

■ **장애인도서관보다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적절하다**

○ 대신 국가는 모든 도서관들이 적절한 장애인 대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할 적절한 제도적 수단을 가질 필요성은 인정함. 그러나 그 수단은 별도의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1)의 국립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제45조)가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함.

■ **독서진흥에 대한 배려가 없다**

○ 개정 법률안(2)은 독서진흥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면서 현행 법률과 개정 법률안(1)과 달리 독서진흥 조항을 전면 삭제했음. 물론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것은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독서진흥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 독서진흥 관련 법률의 제정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언제 제정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독서진흥에 대한 규정을 전면 삭제한 것은 오히려 독서진흥 활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임.

○ 개정 법률안(2)은 독서진흥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제43조에서는 정부에게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연차보고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임.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대한 성명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정책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동참과 학부모, 시민단체의 참여로 학교도서관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을 시설에서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교육적인 활용을 위한 전문가인 사서교사는 전국에 300여명으로 최초의 사서교사가 탄생한지 30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부당한 대우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 방안에서 사서교사 배치를 강조했으면서도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사서교사 배치를 회피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2006년의 사서교사 배치가 0명이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전체 교원은 교원법정정원의 88%를 채우고 있지만, 사서교사는 3%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사서교사 배치 의무규정이 있고 시행령에는 배치기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서교사 배치에 있어서 교과교사 혹은 비교과교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외형 갖추기에 급급해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화려하지만 기초가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독서교육과 논술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 역할을 위한 핵심 인력인 사서교사 배치는 외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눈을 가리고 임기응변식 대응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2006년 사서교사 배치 0명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적어도 사서교사를 다른 비교과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 전국전문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의회,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